

정당방위,
그래도 형사책임을
져야 할까요?

호찌민시에서 있었던 **실제 판결**

판결 제91/2019/HSST호 · 호찌민시 인민법원 · 2019. 3. 28.

L씨가 트랙터 트레일러를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때, 일면식도 없는 H씨가 갑자기 칼을 들고 운전 실로 뛰어들어 L씨의 머리를 한 차례 찔렀습니다. 몸싸움 과정에서 L씨가 칼을 빼앗아 H씨의 등을 두 차례 찔렀고, H씨는 현장에서 사망하였으며 L씨는 상해율 22%의 부상을 입었습니다. 검찰은 형법 제 126조 제1항에 따라 L씨를 기소하고 **징역 12개월에서 18개월**을 구형하였습니다.

법원의 판단 및 판결

H씨가 아무런 이유 없이 먼저 공격하였으므로 L씨에게 방위권이 인정되나, 더 긴 칼(H씨의 15.5cm 칼에 비해 32.5cm)로 상대방의 등을 두 차례 찔른 것은 필요한 정도를 넘어선 반격에 해당합니다.

법원은 L씨에게 “정당방위의 한계를 초과한 살인죄”를 인정하여 **징역 1년 6개월**을 선고하였고(형법 제51조의 감경사유가 추가로 적용되어 구형보다 낮음), 아울러 **1억 8,900만 동**의 배상과 피해자의 자녀 **3명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매월 부양비를 지급할 것**을 명하였습니다.



정당방위란 무엇이며, 어떤 경우에 “한계를 초과”한 것으로 보는가?

2015년 형법 제22조 제1항: 정당방위

“정당방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정당한 권리·이익이나 국가·기관·조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, 그러한 이익을 침해하고 있는 자에게 필요한 한도에서 반격하는 행위를 말한다. 정당방위는 범죄가 아니다.”

2015년 형법 제22조 제2항: 정당방위의 한계 초과

“정당방위의 한계 초과란 침해행위의 성질 및 사회적 위험의 정도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정도를 명백히 넘어선 반격행위를 말한다. 정당방위의 한계를 초과한 자는 본법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진다.”

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병존한다

2015년 민법 제584·585·586·591조: 계약 외 손해배상의 근거

- 타인의 생명·건강을 침해한 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, 배상액은 실제 손해와 과실의 정도를 기준으로 정한다.
- 생명 침해로 인한 손해에는 치료비, 장례비, 피해자가 부양의무를 지고 있던 자에 대한 부양비 및 정신적 손해가 포함된다.

정당방위의 한계를 초과하면 어떻게 처벌되는가?

2015년 형법 제126조: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

- 제1항: 2년 이하의 비구금 교화 또는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.
- 제2항: 2인 이상에 대하여 범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.

2015년 형법 제136조: 상해만 발생하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

- 제1항: 신체 손상률 31%~60%인 경우 500만~2,000만 동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비구금 교화.
- 제2항·제3항: 손상이 더 중한 경우(31%~60% 또는 61% 이상), 다수인에 대한 경우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 3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.

제126조 (한계 초과)

징역 3개월 ~ 5년

제123조 (일반 살인)

7~20년/무기징역/사형

제126조의 형량은 제123조(정당방위 요소가 없는 살인죄)보다 현저히 낮습니다. 법률이 발단이 된 사정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. 즉, 행위자는 본래 방위권을 행사하고 있었고 다만 그 반격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섰을 뿐입니다.

혼동하기 쉬운 세 가지 형사책임 조각사유

	제22조: 정당방위	제23조: 긴급피난	제24조: 범죄자 체포
상황	적법한 이익을 침해하고 있는 자에 대한 반격	더 큰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더 작은 손해를 가하여야 하는 경우	범죄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필요한 유형력을 행사
영향을 받는 대상	침해행위를 하고 있는 자	공동의 이익일 수 있으며 특정인을 겨냥하지 않음	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르고 있어 체포가 필요한 자
형사책임을 지는 경우	필요한 정도를 명백히 넘어선 반격	발생한 손해가 그 상황의 요구를 명백히 초과	필요한 정도를 명백히 넘어선 유형력 행사

세 가지 제도의 공통점: 손해를 가하는 행위는 “필요한” 정도에 머무를 때에만 형사책임을 조각되며, 그 정도를 넘어서면 행위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여전히 형사책임을 집니다.



문의하기

DEDICA의 변호사 및 법률 전문가 팀이 언제나 도와드립니다. 지금 문의하시면 심도 있는 법률 자문과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.

기업 및 투자
형사 사건

상시 법률자문
인수합병 (M&A)

분쟁 해결
상표 및 저작권



주소

호찌민시 꾸언호아동 하이바쯔 171, A&T 빌딩 11층



이메일

david@dedica-law.com



전화

+84 39 969 0012



웹사이트

www.dedica-law.com



지금 전화하시거나 메시지를 남겨 주시면 상담해 드립니다.